

호우피해에 대한지방세감면(안)

의안	
번호	

제출연월일 : '99. 9.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제안이유

- '99.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경제적 고통과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'99년도분 시세(주민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, 사업소세)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임.

주요 내용

-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·물적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(균등할)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(토지분), 사업소세(종업원할) 감면
- 주민세(균등할)
 - 건축물(기계장치포함)의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(그 건축물의 세입자 포함)
 - 건축물이 유실, 전파, 반파 피해를 입은 경우
-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(토지분)
 - 건축물 유실, 전파, 반파 피해를 입은 부속토지
 - 농경지(전, 답)가 유실, 매몰된 당해 토지
 - 농지법 시행령 제3조(농업인의 범위)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가축 2두, 중가축 10두, 소가축 100두, 가금 1,000수 이상 폐사 또는 유실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사유부지
- 사업소세(종업원할)
 -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수해로 인해 건축물이 파

손(연면적의 2분의 1이상)되었거나 생산설비의 손상으로 1월이상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

근거법령

지방세법 제9조의2(천재등으로 인한 감면),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(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)